



감정평가서 전자서명(원본) 증명서

《기본 정보》

감정서번호	260331-13-2201
평가금액	91,618,665 원
평가기관 / 평가자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이명주
서명해쉬 페이지수	총 24 페이지

《서명자 정보》

구분	소속 / 성명	서명해쉬(일부)	서명시간
담당평가사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이명주	eyJhbGciOiJFUzI1Nils	2026-04-13 15:11:00.0
대표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이명주	eyJhbGciOiJFUzI1Nils	2026-04-13 15:12:00.0
심사자	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 황혜원	eyJhbGciOiJFUzI1Nils	2026-04-13 15:12:00.0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원본 감정평가서임을 확인합니다.

본 문서는 [전자서명법 제3조 2항]에 의거 우리 협회가 운영하는 감정평가서 전자서명 시스템으로 생성된 원본 감정평가서로,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며 법적효력을 갖습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본 문서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변기범 소유물건

의뢰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서번호 : 260331-13-2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이 명 주

이 명 주

(주)리얼티뱅크감정평가법인 강원지사 지사장 이명주



감정평가액	구천일백육십일만팔천육백육십오원정(W91,618,665.-)					
의뢰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감정평가 목 적	공매(국세, 지방세)		
제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변기법 (2025-05878-A02)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의뢰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6.04.08	2026.04.08	2026.04.10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 5,848x- 3	토지	1,949.3333	47,000	91,618,665
		이	하	여	백	
	합 계					W91,618,665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황 혜 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삼현리 소재 '삼현리 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의뢰한 구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 대상물건

가. 토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년개별지가 (원/㎡)	비고
1	삼현리 630	1949.3333	생산관리	전	전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7,800	변기범 소유지분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후첨 "위치도" 및 "사진용지" 참조.

3. 기준시점 결정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04월 08일로 함.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의 실지조사는 2026년 04월 08일에 실시하였으며, 귀 제시목록 및 관련공부에 의거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준가치

본건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음.

6. 감정평가 조건

해당사항 없음.

7. 그 밖의 사항

- 본건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자별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귀 제시 지분면적에 의거 사정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 본건 지상에 전나무 등 제시외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평가목적에 고려하여 이에 구매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물건의 개황

1. 토지개황

지 리 적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삼현리 소재 삼현리마을회관 남서측 원거리에 소재함.
주 위 환 경	주위는 전, 답,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 통 상 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형 상 · 지 세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임.
이 용 상 황	현황 전임.
접 근 도 로 상 황	동측으로 세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등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 개, 닭, 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 사슴, 소, 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및 기 타	-.
제 시 외 물 건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방법의 개요

감정평가방법은 대상물건의 성격·감정평가목적 또는 조건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및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이 있음.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방법의 내용
거래사례 비교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조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원가법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이 때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임.
수익환원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및 대상물건의 성격, 감정평가목적 을 고려하여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은 주된 감정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① 토지의 비교방식에는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이 있으며, 시장에서 거래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이 본건 토지의 시장가치 산정에 적절한 감정평가방법으로 판단됨.
 - 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및 상기 판단 근거에 따라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가. 공시지가기준법

1) 비교표준지 선정

본건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 중 본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공법상제한사항, 주위환경, 지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호(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6.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지목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가	삼현리 629-4	2,631	생산관리	전	전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17,900	-

2) 위치도

후첨 “광역위치도” 및 “상세위치도” 참조.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생산관리지역 : 2026.01.01. ~ 2026.04.08]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6.01.01. ~ 2026.02.28.	0.061	2026년 02월까지 누계분
2026.02.01. ~ 2026.02.28.	0.032	2026년 02월분
누 계 (2026.01.01. ~ 2026.04.08.)	0.106 (1.00106)	$(1 + 0.00061) * (1 + 0.00032 * 39/28)$ = 1.00106

※ 2026년 03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기준시점 현재 미고시되어 2026년 02월분을 연장 추정하여 적용함(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지역요인 비교

4.1) 지역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환경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지세	경사의 방향
		경사도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4.2)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5.1)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형상
	고저 등	고저 (경사지 등)
		경사의 방향
	정작의 장애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지이용상황	토지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토양오염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기타조건	기타	규제의 정도
		장래의 동향
		기타

5.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비교표준지(가)와 대체로 대등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

6.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교통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인근지역 유사 부동산의 거래시세, 가격동향 및 감정평가사례 등과의 균형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근의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감정평가사례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자 함.

6.2) 산정방법

인근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가격과 사례기준 표준지 가격과의 격차율을 검토하여 산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 = 사례가격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표준지의 기준시점 현재 가격 =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6.3) 가격조사 자료

6.3.1) 감정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①	삼현리 578	생산관리	답	전	50,000	2024.08.28	경매평가
②	삼현리 523	생산관리	답	전	63,000	2025.12.29	경매평가
③	삼현리 628	생산관리	답	전	48,966	2025.03.06	토지거래사례
④	삼현리 517-1	생산관리	전	전	51,698	2023.05.10	토지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4)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6.4.1) 적용 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①을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을 위한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6.4.2)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기호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정단가 (원/㎡)	격차율
①사례	50,000	1.000	1.00955	1.000	0.931	46,995	2.623
(가)표준지	17,900	-	1.00106	-	-	17,919	
※ 시점수정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생산관리지역 지가변동률, 2024.08.28~2026.04.08) : 1.00955							
※ 지역요인 : 인근지역에 소재하는바,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 개별요인	가로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농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1.05
	접근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열세함.					0.95
	환경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인근환경 등에서 다소 열세함.					0.98
	획지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행정적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기타조건	대체로 대등함.					1.00
	계	-					0.931

6.4.3)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결정의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해 상기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였음.	2.6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7)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기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7,900	1.00106	1.000	1.000	2.62	46,948	4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거래사례비교법

1) 거래사례 선정

대상 토지의 인근 및 유사지역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들 중에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주위환경 등에 있어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③을 선정함.

기호	소재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거래일자	비고
①	삼현리 578	생산관리	답	전	50,000	2024.08.28	경매평가
②	삼현리 523	생산관리	답	전	63,000	2025.12.29	경매평가
③	삼현리 628	생산관리	답	전	48,966	2025.03.06	토지거래사례
④	삼현리 517-1	생산관리	전	전	51,698	2023.05.10	토지거래사례

※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센터(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2) 사정보정

정상적인 사례로 판단되며 별도의 사정보정은 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사례가 있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생산관리지역 : 2025.03.06~ 2026.04.08]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3.06. ~ 2026.04.08.	0.638 (1.00638)	2025.03.01 ~ 2025.03.31 : 0.050
		2025.04.01 ~ 2025.04.30 : 0.056
		2025.05.01 ~ 2025.05.31 : 0.029
		2025.06.01 ~ 2025.06.30 : 0.050
		2025.07.01 ~ 2025.07.31 : 0.035
		2025.08.01 ~ 2025.08.31 : 0.039
		2025.09.01 ~ 2025.09.30 : 0.052
		2025.10.01 ~ 2025.10.31 : 0.080
		2025.11.01 ~ 2025.11.30 : 0.067
		2025.12.01 ~ 2025.12.31 : 0.081
		2026.01.01 ~ 2026.02.28 : 0.061
		2026.02.01 ~ 2026.02.28 : 0.032
		$(1 + 0.00050 \times 26/31) \times (1 + 0.00056) \times (1 + 0.00029) \times (1 + 0.00050) \times (1 + 0.00035) \times (1 + 0.00039) \times (1 + 0.00052) \times (1 + 0.00080) \times (1 + 0.00067) \times (1 + 0.00081) \times (1 + 0.00061) \times (1 + 0.00032 \times 39/28)$
		≒ 1.0063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지역요인 비교

4.1) 지역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접근성
환경조건	기상조건	일조, 습도, 온도, 통풍, 강우량 등
	지세	경사의 방향
		경사도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4.2)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므로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5.1)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건	항목	세항목
가로조건	접근도로의 상태	접근도로의 배치, 폭, 구조 등
	농로의 상태	농로의 폭, 포장 등
접근조건	교통의 편의성	인근 취락과의 접근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출하지와의 접근성
환경조건	자연환경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일조, 통풍 등
		관개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배수의 양부
		수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규모, 형상 등	면적
	고저 등	형상
		고저 (경사지 등)
	정작의 장애	경사의 방향
	토지이용상황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토양오염	토지이용상황 등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토양오염 상태 및 정화비용 등
기타조건	기타	규제의 정도
		장래의 동향
		기타

5.2) 개별요인 비교

기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 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비교치
1	1.00	1.00	1.00	0.95	1.00	1.00	0.950
	본건은 사례 ③ 대비 획지조건(경작의 편부 등)에서 열세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단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48,966	1.000	1.00638	1.000	0.950	46,814	47,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토지단가의 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가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단가와 비교할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단가로 대상 토지의 단가를 결정함.

기호	공시지가기준법 (원/㎡)	거래사례비교법 (원/㎡)	결정단가 (원/㎡)
1	47,000	47,000	47,000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면적 (㎡)	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1949.3333	47,000	91,618,665	-
	소계	1,949.3333		91,618,665	-
합계				91,618,665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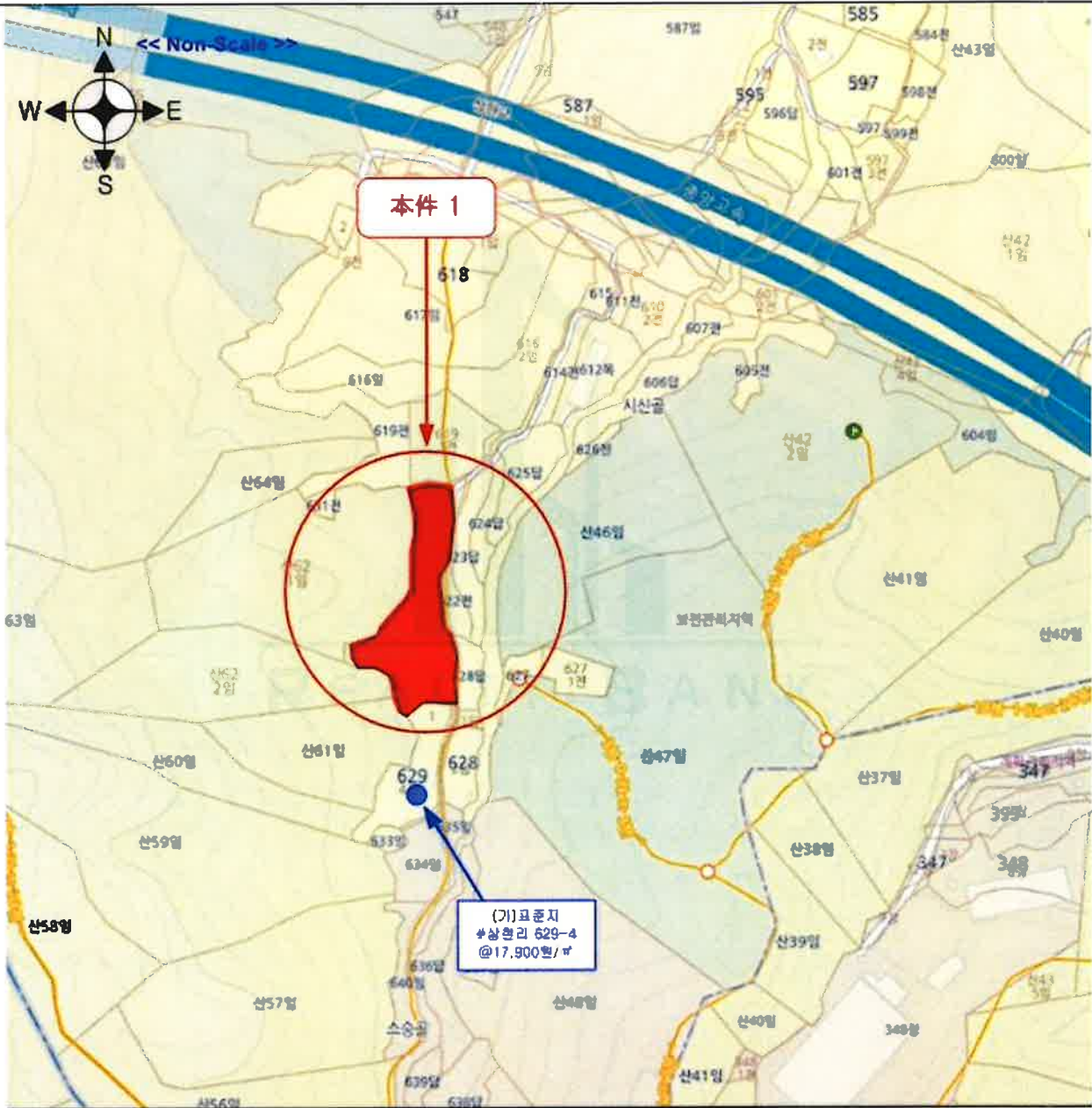
본건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 인근 시세분석, 거래동향의 파악 등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산출하였으며, 감정평가사례 및 인근 가격수준, 대상물건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바 본건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이 하 여 백 -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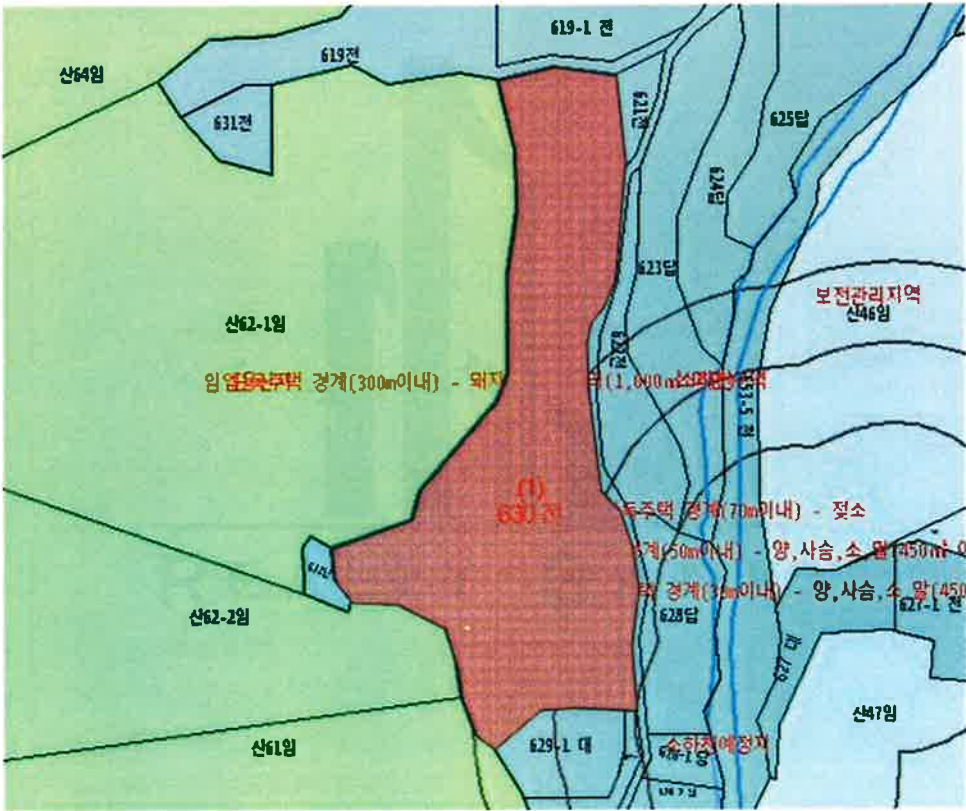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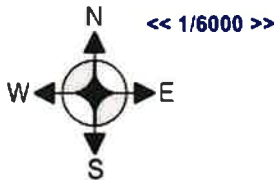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 삼현리 630



범례		본 건		표 준 지		거 래 사 례		담		보		해
		일 반 거 래		보		심		자 산 채 권 가		공		취 득 처 분



지 적 도



범 례		감정평가대상토지		용도지역구분선		감정평가건물3층이상
		도		로		감정평가제외건물
		도시계획선				제시외건물
						감정평가건물2층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전경

